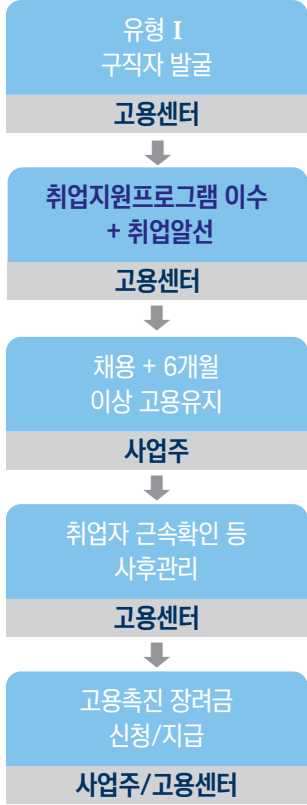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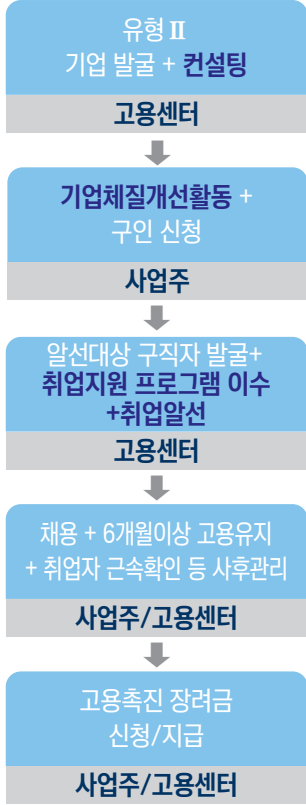
지원절차



유형 I



유형 II



신청기간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1회차 신청
* 신청기간이 도과할 경우 장려금 지원 불가

신청방법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 ([http:// 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에서 신청

문의



장려금 전반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 055)239-0960, Fax 0503-8803-0424

구인구직상담 기업컨설팅

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 ☎ 055)239-0940, Fax 0503-8803-0422

부리산업 업종코드 (8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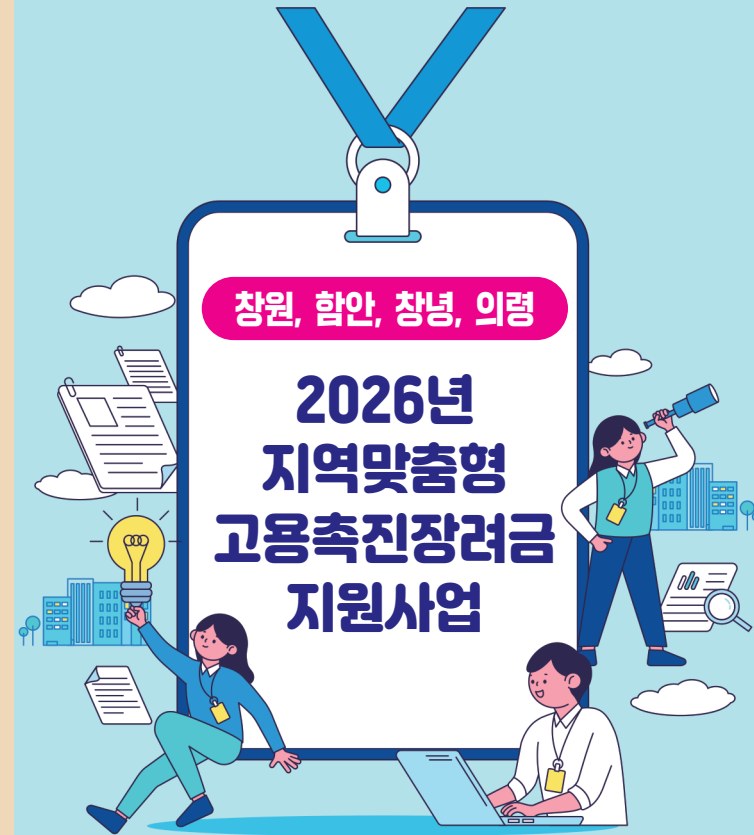
2025. 10. 1. 개정, 코드번호순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17124	적층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6294	전자코일,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4221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91	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25922	도금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31311	유인 항공기,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과
집중 취업알선을~

기업에게는 장려금과 연계한 신속한 매칭으로
빈자리 해소를 돕는



창원, 함안, 창녕, 의령

2026년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사업개요



기간 2026년 1월 ~ 12월

내용 창원지청 자체 선정 취업취약계층 및 빈일자리 업종에 대하여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연간 최대 720만원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유형 I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유형 II 업종에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유형 I) 취업취약계층

아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센터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3개월 이상 실업 청년 (34세 이하)
- 3개월 이상 실업 고령자 (55세 이상)
- 구직자도약패키지 3회 이상 참여자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아래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컨설팅 및 체질개선활동 후 고용센터 취업알선을 통해 구직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뿌리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코드)
 - 운수 및 창고업(49~52코드)
-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①유형은 불임 뿌리산업 업종코드(82개), ②③유형은 중분류 전체 해당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할 사업장만 지원가능

-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 ※ 구직자는 구직등록 관서·거주지 무관



지원요건



(공통 적용사항)

- 구직등록**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고용센터 내 단기특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예시

- 일자리 수요데이 전기업 채용설명회 또는 관내 업종별 기업 채용설명회 참여
- 훈련기관 자체 직장예절 특강 별도 개설
- 혼자 면접 보기 두려운 구직자를 위한 면접 대비 기업 설명 및 동행면접 실시
- 센터 내 단기 취업특강, 진로지도프로그램,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참여
- 중장년 내일센터 및 여성새일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고용센터 직원의 구직자에 대해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등 컨설팅
-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 참여 안내 및 수강

취업알선 고용센터에서 유형별 구직자에 대해 취업 알선

(유형 II 적용사항)

기업 체질개선 활동 유형 II 업종 기업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구직자 채용 전 기업 체질개선 활동 필요

기업 체질개선 활동 예시

- 급식실 조리사는 폐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손목·무릎이 아프다는 이유 등 기피 직종 → 참·부항 등 한방치료 4회 무료/연 1회 폐 CT 촬영비 지원 등 복지항목 신설
-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휴게실 리모델링, 사무공간 냉난방설비 추가 설치, 커피머신 구입, 사내 교육장 신설, 흡연실 외부 이동 설치
- 여성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한 여자휴게실탈의실 등 여성 편의시설 설치
- 기업인지도 확산을 위한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참여 후 기업 특성을 살린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구분	6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지원주기 고용한 날부터 6개월마다 지급(월할 지급하지 않음)

지원한도 직전연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를 지원(최대 30명)
※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3명 한도

지원제외



- ▶ 지급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 ▶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등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 지급 대상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등